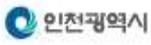
	<b>보도자료</b>		<b>2025년</b> <b>수도권매립지 종료</b> 
	배포일자	2021년 4월 19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감사관	담당자	• 청렴윤리팀장 임미선 ☎440-3181 • 담당자 송종현 ☎440-380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중앙정부와 공직자 신뢰도 높이기 나선다.

- 인천시와 국민권익위,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MOU) 체결 -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직위와 직무 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 해결 및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의 협력 ▲국민 참여·소통에 기반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재발 방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들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제고  
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시-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서 1부.

※ 관련 사진은 11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 [only.webhard.co.kr](http://only.webhard.co.kr) )에 업로드

-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

## 업 무 협 약 서

인천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천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2.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공직자(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
3.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및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협력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및 자문·지원 등 협력 체계 강화
5. 국민고충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적극행정 및 민원처리 협력
6.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7.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각종 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을 위한 협력

- 8. 국민생각함에 기반한 청년 등 지역 주민들의 정책 참여 촉진 및 지역 내 민원·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
- 9. 그 밖에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발효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021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

인 천 광 역 시  
시 장 박 남 춘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위 원 장 전 현 희

\_\_\_\_\_

\_\_\_\_\_